

100-026. 鮮內검사국 정보-6

- 1942년 9월 29일부터 1943년 8월 9일까지 淸津地方法院, 新義州地方法院, 海州地方法院, 大邱地方法院, 大田地方法院, 平壤地方法院, 釜山地方法院, 咸興地方法院 등에서 치안유지법, 軍機保護法, 保安法등 위반사건에 대하여 송부한 것으로, 총 81건의 기록 수록
- 당시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創氏改名이되었기 때문에, 당사자도 일본식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어 우리의 성명을 밝힐 수 없다. 가급적 당사자의 본적지를 다음 각 항목에서 밝혀줌으로써 호적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1. 1942년 9월 29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金日虎에 대한 치안유지법위반 사건으로 공판청구서와 범죄사실이 첨부되어 있다.
 2. 1942년 9월 29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黃海道 谷山郡 陳興權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이다. 당사자는 징역 4년의 선고를 받았다.
 3. 1942년 9월 30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咸北 吉州郡 東海面 倉村洞 406 金田勝吉, 咸北 明川郡 下古面 土垣洞 653 玄元松竹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이다. 金田勝吉은 징역 5년, 玄元松竹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4. 1942년 10월 5일 新義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平北 慈城郡 中江面 中德洞 510 全城景燮에 대한 판결서로 치안유지법 위반 및 不敬罪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3년을 선고받았다.
 5. 1942년 10월 28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王子勳은 군기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방화, 趙得先은 군기보호법 위반 및 기차왕래 위험, 孫實亭은 기차왕래 위험, 이 밖에 黃瑞東, 韓文明, 宋茂菊, 張執瑞, 楊敬錫, 楊春成, 蔣鴻發, 大山京一等은 군기보호법 위반으로 예심청구서와 범죄사실이 첨부되어 있다.
 6. 1942년 11월 25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信川郡 溫永面 金豐鎭班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공판청구서 및 범죄사실이 첨부되어 있다.
 7. 1942년 11월 25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岩本淸基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공판청구서 및 범죄사실이 첨부되어 있다.
 8. 1942년 11월 25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白川光明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공판청구서 및 범죄사실이 첨부되어 있다.
 9. 1942년 11월 17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咸北 鏡城郡 朱乙溫面 孫泰春 및 全北 全州府 完山町 508 白水雲基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으로, 孫泰春은 징역 8년, 白水雲基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판결서이다. 여기에서 만주 제2방면 제6사장 金日成, 제7사장 吳白龍이 거론되고 있다.
 10. 1942년 11월 19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金日虎에 대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서이다.
 11. 1942년 11월 7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安山炳模, 申璣童, 李木德, 金原瑞甲, 朱松學, 方山遠赫, 佐井二丕, 朝本東弼, 松村昌松, 大原應欽, 岩村博信, 全洲昌鎭, 竹松明哲 등을 치안유지법, 육군형법, 해군형법 위반, 범인은닉, 강도상해, 조선아편단속령, 주거침입 등으로 예심 청구한 서류 및 범죄 사실이 첨부되어 있다.
 12. 1942년 12월 15일 大邱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이며, 慶南 固城郡 固城邑 城內洞 336 青松忠正(沈載仁), 慶南 蔚山郡 大峴面 呂川里206 光井根徹(朴根徹), 慶南 固城郡 固城邑 牛山里 762 巴山智雄(李相晚), 咸南 北青郡 俗厚面 西島里 424 青木虎(李虎), 忠南 牙山郡 仙掌面 新洞里 145 新井國正(朴應九), 全南 濟州島 城山里

- 163의1 高原通年(高雲河), 慶南 固城郡 下二面 臥龍里 346 新井允守(朴允守), 全南 濟州島 舊左面 月汀里 440 全澤相勳(金相勳), 忠南 牙山郡 新昌面 水長里 249 金光敏男(金濬中), 慶南 固城郡 巨流面 銀月里 197 安本在官(李在官), 慶南 蔚山郡 斗西面 錢邑里 885 東本昇治(鄭鎮根), 慶南 蔚山郡 彦陽面 盤松里 381 宇村鴻吉(宋炳虹), 慶南 蔚山郡 蔚山面 地亨里 106 茂村炳柱(孫炳柱), 慶南 固城郡 巨龍面 銀月里 337 巴山相浩(李相浩), 全南 濟州島 翰林面 高山里 204 神濃實(姜成俊), 慶北 尙州郡 沙伐面 元興里 1111 松本清孝(朴永振), 全南 羅州郡 茶道面 楓山里 4 豊山建熹(洪建熹), 慶北 尙州郡 尙州邑 南町 157의 6 宋岡茂雄(趙滢昊) 등 18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예심종결결정서이다.
13. 1942년 12월 21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로서 咸北 吉州郡 東海面 倉村里 891 岩村在仁에 대하여 징역2년 6월을 선고하였다.
14. 1942년 12월 12일 大田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山成國義(郭在寬), 金本鍾煥(金鍾煥), 松岡道熙(姜道熙), 白川淳鶴(白淳館), 金子光明(金光鉉), 南宮己石, 宮本俊男(呂運三)에 대한 예심청구서 및 범죄사실이 첨부되어 있다
15. 1942년 11월 30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平北 金炳植외 1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로서 두 명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16. 1942년 12월 3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예심종결결정서로서, 당사자는 咸南 洪鳳郡 雲鶴面 豊湖里 115 安田炳模, 咸北 會寧郡 申城童, 咸南 甲山郡 李木德, 咸北 明川郡 金原瑞甲, 淸律府 万山遠赫, 咸北 城津郡 佐井二丕, 朝本東弼, 松村昌松, 大原應欽, 咸北 吉州郡 岩村博信, 咸北 會寧郡 金洲昌鎭, 竹村明哲 등이다.
17. 1942년 12월 3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공판청구서로서, 金山相德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범죄사실이 첨부되어 있다.
18. 1942년 12월 3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공판청구서로서, 長本博公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범죄사실이 첨부되어 있다.
19. 1943년 1월 8일 新義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로, 당사자 平北 大同郡의 延安明浩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20. 1942년 12월 26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로, 당사자 平南 龍岡郡의 白川光明에 대하여 징역1년을 선고하였다.
21. 1943년 1월 19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黃海 新溪郡의 岩本清基에 대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단기 1년, 장기 2년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22. 1943년 1월 19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공판 청구서로, 三井仁視에 대한 범죄사실이 첨부되어 있다.
23. 1943년 1월 12일 新義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공판 청구서로, 당사자는 靑木佐彌이다.
24. 1943년 1월 19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鳩山明和에 대한 공판 청구서이다.
25. 1943년 1월 29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黃海 信川郡 金豊鎭珪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로서 단기 2년 6월, 장기 4년이 선고되었다.
26. 1943년 1월 19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黃海 鳳山郡 利原永茂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이다. 당사자는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27. 1942년 12월 31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이

- 며 당사자는 慶南 昌寧郡의 東平元謨로 단기 1년, 장기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28. 1943년 1월 19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당사자 利原永茂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공판청구서와 범죄사실이 첨부되어 있다.
29. 1943년 1월 28일 新義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공판청구서이다. 당사자는 龜龍 權준範이다.
30. 1943년 1월 26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공판청구서로, 당사자는 군기보호법 위반의 朴靑松이다.
31. 1943년 1월 26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공판청구서로, 치안유지법 위반, 군기보호법 위반혐의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는 松田昌輔, 宮本東甫, 金山渭, 出万孝銅, 鎭川淳模, 太原勇, 德山丙基, 方山祥鳳, 蜂谷台乙, 全允弼, 豊木柱翊등 11명이다.
32. 1943년 1월 26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이다. 당사자는 咸北 明川郡의 全浦允極으로 단기 1년, 장기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33. 1943년 1월 26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의 판결서이다. 당사자는 咸北 鶴城郡의 山原泰變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5년을 선고받았다.
34. 1943년 2월 날짜미상 平壤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공판청구서로서, 당사자는 林允傑이다.
35. 1943년 2월 10일 平壤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공판 청구서이며, 당사자는 潘俊浩, 杉間龍一, 吳亨善이다.
36. 1943년 2월 12일 平壤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이며, 당사자 平壤府 船橋町 蔚山憲, 平壤府 上需町 伊藤灣洙, 平南 龍岡郡 江原正雄등 3명에게 모두 징역 2년의 선고가 있었다.
37. 1943년 2월 13일 新義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기소장이며, 平沼世均의 범죄사실이 첨부되어 있다.
38. 1943년 2월 15일 新義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판결서로, 당사자 靑木佐輔는 京鍵道 水原郡 半月面 屯垈里 193에 本籍을 두고 있으며, 단기 1년 6월, 장기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39. 1943년 2월 27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군기보호법 위반사건 당사자 土谷 繁一의 공판청구서이다.
40. 1943년 2월 27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공판청구서로 군기보호법, 국경취체법, 외국환관리법 등 위반혐의의 安田益洙에 대한 기소장이다.
41. 1943년 2월 27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판결서로서, 淸津府 浦項洞128 長本博公에 대하여 단기 1년, 장기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42. 1943년 3월 6일 新義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판결서로서, 平南 中和郡 東頭面 平沼世均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단기 1년, 장기 3년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43. 1943년의 3월 13일 釜山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공판청구서로, 당사자는 碧山仁 품이다. 첨부된 범죄사실에는 일기의 일부가 있다.
44. 1943년 3월 28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판결서로서, 大分縣에 本籍을 둔 일본인 土谷繁一의 군기보호법 위반사건이며 단기 2년, 장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45. 1943년 3월 25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공판청구서로, 당사자 중국인 劉得林에 대한 군기보호법 위반사건이다.

46. 1943년 4월 1일 大田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예심종결결정서이다. 당사자는 慶北 義城郡 比安面 新井孝濬, 慶南 咸安郡 咸安面 德川泰吉, 慶南 統營郡 統營邑 神農敏男, 全北 錦山郡 郡北面 宮本贊雄, 慶南 密陽郡 三浪津面 林宏, 慶北 金泉郡 金泉邑 安本律二, 慶北 大邱府 東雲頂 竹本俊一, 慶南 密陽郡 上東面 廣金榮必, 慶北 義城郡 佳音面 永佳泰雄, 全北 茂朱郡 茂豊面 佳山洛哲, 慶南 南海郡 二東面 平田德變, 慶北 義城郡 義城面 銓平永碩, 慶北 青松郡 青松面 星山元雄, 忠北 永同郡 梅谷面 宮川龍洙, 慶南 蔚山郡 上北面 春山淳一, 慶南 統營郡 長承浦邑 梁原命福, 忠南 瑞山郡 雲山面 平野精敏, 慶南 陝川郡 妙山面 文山洪義, 慶北 慶州郡 甘浦邑 山村東雨, 江原 洪川郡 南面 金海根培, 慶北 禮泉郡 上里面 楠平祐儁, 慶南 咸安郡 咸安面 巴山高芳, 慶北 漆谷郡 仁同面 吉田快福, 慶北 星州郡 船南面 星山購甫, 忠北 清州郡 清州邑 伽山芳雄, 慶北 清道郡 梅田面 吉村岳次郎, 慶北 聞慶郡 山北面 南川源三, 全南 康律郡 兵營面 仁川洪彬, 慶北 迎日郡 迎日面 完山柱鎬, 慶北 崇州郡 崇州邑 松岡鶴夫, 大邱府 新川洞 瀧山清志, 慶北 慶州郡 江西面 淸村穀, 慶南 昌寧郡 遊熙面 岩本崇義, 慶北 清道郡 梅田面 永山大碩, 慶北 軍威郡 岳溪面 高木麟玉 등 35명으로, 국민학교 교사 16명, 대구사범학교학생 19명이 연루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이다.
47. 1943년 4월 15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공판청구서로, 車村致明의 치안유지법 위반이다.
48. 1943년 4월 19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로서, 黃海 海州府 南幸町 三井仁視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49. 1943년 4월 19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로서, 慶南 泗川郡 泗川面 鳩山明和, 黃海 載寧郡 載寧邑 中元-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50. 1943년 4월 20일 新義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로서, 平北 甑山郡 面林面 龜龍權준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51. 1943년 4월 28일 新義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공판청구서인 바, 당사자는 松田文衡이다.
52. 1943년 4월 27일 平壤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로, 당사자는 平南 中和郡 海鴨面 林允傑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53. 1943년 4월 19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로, 당사자인 咸北 茂山郡 茂山邑 金山相德에 대하여 징역 단기 1년, 장기 3년을 선고하였다.
54. 1943년 5월 3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군기보호법 위반사건의 판결서로, 당사자 京畿 安城郡 一竹面 安田益洙에 대하여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55. 1943년 4월 5일 釜山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慶南 昌寧郡 南旨面 碧山仁棼에 대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56. 1943년 5월 5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으로, 咸北 慶興郡 阿吾地邑 車村致明에 대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57. 1943년 5월 6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이며, 중국인 劉得林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58. 1943년 5월 8일 平壤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이며,

- 당사자인 京城府 權水町 平井富 징역5년, 江原 橫城郡 晴目面 吳亨善 징역1년, 慶北 漆谷郡 仁同面 徐佑龍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59. 1943년 5월 11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군사보호법 위반사건의 판결서이며, 咸北 富寧郡 朴青松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60. 1943년 5월 14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군기보호법 위반사건의 예심청구서이며, 당사자는 王韶才이다.
61. 1943년 5월 21일 平壤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보안법 위반사건의 판결서이며, 平南 大同郡 秋乙美面 大野實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62. 1943년 5월 28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이며, 松岡忠模는 치안유지법 및 육군형법, 해군형법 위반, 茂村宗鐵은 보안법위반으로 각각 공판 청구하였다.
63. 1943년 5월 28일 新義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이며, 木村大植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의 예심청구서이다.
64. 1943년 5월 27일 大邱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이며, 藤井康久는 치안유지법, 육군형법, 해군형법 위반, 夏山秉澤 및 金本東潤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공판청구를 하였다.
65. 1943년 6월 10일 咸興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이며, 邵雲泰, 孫樹每, 孫進山, 宋順實 등 4명에 대한 국방보안법, 치안유지법, 군기보호법 위반사건의 예심청구서이다.
66. 1943년 6월 5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문건이며, 朴斗京에 대하여 치안유지법 등 위반으로 예심청구를 하였다.
67. 1943년 6월 16일 大邱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이며, 당사자는 靑松忠正, 光井根澈, 巴山智雄, 靑木虎, 新井國正, 高原通年, 金澤相勳, 金光敏男, 安本在官, 東本昇治, 宇村鴻吉, 茂村炳柱, 巴山相浩 등 13명으로 징역 4년 내지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68. 1943년 6월 17일 고등법원 검사장이 복심법원 검사장 및 지방법원 檢事正에게 송부한, '대만에서의 국방보호법 소정의 절차에 의한 간첩사건 처리상황에 관한 통보'로서, 관련자는 중국인 郭細淸등 9명이다.
69. 1943년 6월 11일 淸津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로서, 咸南 北靑郡 北靑面 松岡忠漢에게는 징역 2년, 茂村宗鐵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70. 1943년 6월 12일 新義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공판청구서로서, 당사자는 玉川守萬이다.
71. 1943년 6월 18일 咸興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예심청구서이며, 당사자는 中山川行, 陽田宇成, 金田榮官, 張田錫天, 盧山光石, 木村方春, 白原信祚, 平山聖均, 竹山成道등 9명이다.
72. 1943년 6월 22일 新義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공판청구서이며, 당사자는 淸州泰誅, 金源學永, 小柳宗善, 木戶世煥 등 4명이다.
73. 1943년 6월 24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공판청구서로서, 당사자는 吳東輝, 松浦仁權, 豊田根石, 松山忠義등 4명이다.
74. 1943년 7월 12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공판청구서로, 당사자는 郭山益浩이다.

75. 1943년 7월 10일 新義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로서, 당사자 平北 龍川郡 內中面 丹山鳳陽은 단기2년, 장기 4년의 징역, 平北 龍川郡 東上面 田村若龍은 단기 1년, 장기 3년의 징역, 平北 龍川郡 內中面 和山奎浩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76. 1943년 7월 28일 新義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로서, 당사자 慶南 昌寧郡 靈山面 玉川宇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77. 1943년 7월 15일 大邱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공판청구서로, 당사자는 高松亨林이다. 慶北 禮泉郡 南浦面에 本籍을 둔 高松의 판결서가 합철되어 있는데, 형량은 징역 3년이다.
78. 1943년 8월 6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군기보호법 위반사건의 예심청구서이며, 당사자는丁秀山이다.
79. 1943년 8월 10일 新義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판결서로서, 당사자 平北 鐵山郡 西林面 淸州泰誅는 징역 4년, 忠北 淸州郡 吾倉面 金源學永, 平南 价川郡 价川邑 小柳宗善, 本戶世煥은 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80. 1943년 8월 9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국방보안법 위반사건의 예심청구서로, 당사자는 田克福이다.
81. 1943년 8월 9일 海州地方法院 檢事正이 송부한 국방보안법 및 군기보호법 위반사건의 예심청구서로서, 당사자는 曲寶珍이다.